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83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안규백·김진표·정일영
민병덕·서영교·김철민
우원식·이정문·김경만
윤후덕·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 16초이지만 현재 접근 금지 거리로는 아동·청소년이 성인들에게 4분 16초 동안 도주할 수 없음. 특히, 20대 남성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7초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11.4초임. 20대 남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35초 이내에 추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3호).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100미터”를 “80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